

'94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검 토 보 고

1995. 11.

내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목 차

I. 결 산 현 황	237
1. 세입결산 총괄	238
2.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239
3.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	244
II. 소관별 세출결산	245
1. 내무국 소관	246
2. 민방위국 소관	252
3. 소방본부소관	255
4. 공무원교육원 소관	259
5. 도민교육원 소관	262
6. 증평출장소 소관	264
III. 예 비 비 지 출	270

I . 결 산 현 황

1. 세입 결산 총괄
2.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
3.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총괄

I. 결산 현황

1.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액 (1)	장 결 정 액 (2)	수 납 액 (3)	비 율		불 납 결 손 액	미수납액
				1 : 3	2 : 3		
합 계	768,810	754,413	733,616	95.4	97.2	239	20,558
일반 회 계	542,151	574,144	553,639	102.1	96.4	239	20,266
특별 회 계	226,659	180,269	179,977	79.4	99.8	-	292
○ 공 기 업	205,507	159,127	158,835	77.2	77.4	-	292
- 공 영 개 발 사	148,526	99,969	99,677	67.1	99.7	-	-
- 지 역 개 발 기	56,981	59,158	59,158	89.4	100	-	-
○ 의 료 보 호	15,786	15,775	15,775	100.0	100	-	-
○ 농 어 촌 장 기 개 발	3,474	3,476	3,476	100.0	100	-	-
○ 대 청 호 책	1,891	1,891	1,891	100.0	100	-	-

□ 검토의견

- '94 세입총결산액은 전년도 예산현액 5,827억2백만원대비 1,861억8백만원이 증액된 7,688억1천만원 규모로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7,688억1천만원에 대하여 98.1%에 해당하는 7,544억1천3백만원이 징수 결정되었는바 이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319억9천3백만원의 증가를 보이고 있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446억8천2백만원이 적게 징수결정 된것임.

따라서 미수납액 205억5천8백만원은 일반회계가 202억6천6백만원, 특별회계가 2억9천2백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에 있어서 2억3천9백만원이 불납결손액인 것으로 사료됨.

2.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가. 일반회계 세입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액 (1)	정 결 정 액 (2)	수 납 액 (3)	비 율			분 결 손 액 (4)	미수납액
				1 : 3	2 : 3	2 : 3		
합 계	542,151	574,144	553,639	105.9	102.1	96.4	239	20,266
지 방 세	116,496	56,552	138,136	134.3	118.5	88.2	238	18,178
세 외 수 입	106,942	13,679	111,590	106.2	104.3	98.1	1	2,088
○ 재산임대 수 입	109	179	155	163.9	141.8	86.5	-	24
○ 사용료수입	2,679	3,531	3,313	131.8	123.6	123.6	-	218
○ 수수료수입	752	1,090	1,090	144.9	145.0	145.0	-	-
○ 사업장수입	702	721	721	102.7	102.7	102.7	-	-
○ 이자수입	1,801	3,368	3,368	186.9	186.9	186.9	-	-
○ 재산매각 수 입	13,712	14,174	14,092	103.3	102.7	102.7	-	82
○ 이 월 금	71,090	71,084	71,084	100	100	100	-	-
○ 용 자 금 회 수 수 입	729	1,125	1,125	154.3	154.3	100	-	935
○ 부 담 금	9,464	9,910	8,975	104.7	94.8	90.5	-	-
○ 잠 수 입	5,804	6,699	6,400	115.4	110.2	95.5	-	299
○ 과 년 도 수 입	100	1,796	1,266	1,795 .8	1,266 .1	70.5	1	529
지방교부금	142,206	140,750	140,750	98.9	98.9	100	-	-
지방양여금	49,748	41,432	41,432	83.2	83.2	100	-	-
보 조 금	109,389	104,361	104,361	95.2	209.7	100	-	-
지 방 채	17,370	17,370	17,370	100	100	100	-	-

□ 검토의견

- '94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예산현액 3,441억3천6백만원에 대비 1,980억1천5백만원이 증액된 5,421억5천1백만원 규모로서
 -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5,421억5천1백만원에 대하여 105.9%에 해당하는 5,741억4천4백만원이 징수결정 되었는바,
 - 예산보다 초과징수 결정된 319억9천3백만원의 내역으로는
 - 지방세 400억5천6백만원으로 이는 부동산과 표인상 및 대형건축물 신축증가 등의 세원발굴 등에 기인되며
 - 세외수입에서 67억3천7백만원은 도로법시행령개정에 따른 도로사용료증가와 골재 채취량증가 각종시험 및 민원증가 등의 증가요인의 작용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 의존수입에서는 예산액보다 147억9천9백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보여짐.
 - 징수결정된 5,741억4천4백만원중 96.4%에 해당하는 5,536억3천9백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205억5백만원중 결손처분된 2억3천9백만원을 제외한 202억6천6백만원은 금년도로 이월 되었음.

· 지방세	181억7천8백만원
· 세외수입	20억8천8백만원
 - 일반회계의 결손처분액 2억3천9백만원의 세원별 내역으로는
 - 지방세가 2억3천9백만원으로

[취득세, 면허세, 소방공동시설세	1억9백만원
과년도 수입	1억2천9백만원

 이며,
 - 불납 결손 사유는

[행 방 불 명	4천5백만원 (19.0%)
시 효 소 멸	2천4백만원 (10.0%)
무재산 및 기타	1억6천9백만원 (71.0%)

 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미수납액 202억6천6백만원은 징수결정액의 3.5%를 차지하고 있는바 그사유로는

행 방 관 명	16억7백만원 (7.9%)
징 수 유 예	5백만원 (0.2%)
채무자재력부족	31억2천3백만원 (15.4%)
납 세 자 태 만	33억3천2백만원 (16.4%)
재 산 압 류	97억7천5백만원 (48.2%)
기 타	24억2천4백만원 (11.9%) 이며

재산압류, 납세자태만, 채무자 재력부족 등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 '94세입결산은 예산액보다 5.9%를 상회하는 징수결정을 하였고 96.4%의 수납 실적을 거양함으로써 차질없는 세입확보를 기하였다 사료됨.

나. 특별회계 세입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액 (1)	징결 수액 (2)	수납액 (3)	비 율			발 납 손액 (4)	미수납액 (5) (2-3-4)
				1 : 3	2 : 3	2 : 3		
합 계	226,659	180,269	179,977	79.5	79.4	99.8	-	292
○ 공영개발 사	148,526	99,969	99,677	67.3	67.1	99.7	-	292
○ 지역개발 기	56,982	59,158	59,158	103.8	103.8	100	-	-
○ 도로보수 중기관리	15,786	15,775	15,775	99.9	99.9	100	-	-
○ 농 어 촌 소득개발	3,474	3,476	3,476	100	100.1	100.1	-	-
○ 대 청 호 대	1,891	1,891	1,891	100	100	100	-	-

□ 검토의견

○ '94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예산현액 2,385억6천5백만원에 대비 119억6백만원이 감액된 2,666억5천9백만원 규모로서

○ 공영개발사업등 5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 2,266억5천9백만원에 대하여 79.5%에 해당하는 1,802억6천9백만원이 징수결정 되었는바 그 내용으로는

·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1억7천7백만원

·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 2백만원이 초과징수결정된 반면

· 대청호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은 18억9천1백만원을 100%로 징수결정하였고

· 의료보호특별회계는 1천1백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485억5천7백만원이 예산액에 미달되었는바

○ 이는 가경2지구 택지가 미분양되고 있고 3지구 택지 보상금이 사업지연으로 승인 받은 지방채 361억원을 당해년도에 차입할 필요가 없어 미차입함에 기인된 것으로 사료됨.

미차입 내역으로는

·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있어 △485억5천7백만원

·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1천1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3.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계	87,740	75,927	8,269	3,544
내 무 국 소 관	44,797	39,296	4,544	957
민방위국 소관	358	339	-	19
소 방 본 부	21,084	17,205	2,630	1,249
공무원 교육원	1,538	1,451	-	87
도 민 교 육 원	1,304	1,147	-	157
중 평 출 장 소	18,659	16,489	1,095	1,075

□ 검토의견

- 94년도 내무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예산현액 규모는 877억4천만원으로
- 전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774억1천만원에 비해 103억3천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 94년도 내무위원회소관 총예산현액 대비 86.5%인 759억2천7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9.4%인 82억6천9백만원 중 80억9천7백만원은 공기부족등의 사유로 익년도로 사고이월되었고, 1억7천2백만원은 명시이월 되었으며 4.0%인 35억4천4백만원은 예산집행잔액 및 지급사유미발생과 당초계획의 변경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용처리되었음.
- 세출결산에 따른 전체적인 검토의견으로는 전반적으로 적정한 예산집행이 이루어 졌다 할 수 있으며 이견은 없으나 예산편성 및 계상시 좀더 면밀한 수요판단으로 불용액의 과다발생 요인을 줄여나 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II. 소 관 별 세 출 결 산

1. 내 무 국 소 관
2. 민 방 위 국 소 관
3. 소 방 본 부 소 관
4. 공 무 원 교 육 원 소 관
5. 도 민 교 육 원 소 관
6. 증 평 출 장 소 소 관

1. 내 무 국 소 관

1. 내 무 국 소 관

가. 세 출 총 관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계	44,797	39,296	4,544	957
내 무 행 정	10,401	10,108	-	293
시.군구행정운영	907	874	-	33
행 정 감 사	106	95	-	11
지 역 안 정	90	88	-	2
지 역 개 발	7,522	7,324	50	148
문화 예술 진흥	9,589	9,317	-	272
관광 국제 교류	4,269	4,261	-	8
체육 진흥 관리	4,279	4,252	-	27
사 회 교 육	58	22	-	36
지방 수입 관리	197	172	-	25
회계및재산관리	7,379	2,783	4,494	102

○ 내무국소관의 총예산현액은 447억9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437억6천3백만원에 비해

2.3%인 10억3천4백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 이중 87.7%인 392억9천6백만원이 지출되었고 10.1%인 45억4천4백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예산현액의 2.1%인 9억5천7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나. 일반회계 세출결산

□ 검토의견

○ 내무행정분야에 있어서

· 내무국소관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인 447억9천7백만원과 대비해 볼때 23.2%인 104억1백만원 규모로 97.2%인 101억8백만원이 지출되었고,

2.85%인 2억9천3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 불용액발생 내역으로는

- 예산집행잔액	2억4천7백만원
- 예산절감액	1백만원
- 지급사유미발생	2백만원
- 계획변경취소분	4천3백만원 으로서

이는 인건비 및 계수당 등과 급량비,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제세공과금 출연금 등의 집행잔액과 국외여비 및 보상금의 계획변경취소분 및 예산절감액에 따른 예산집행잔액으로서 이견은 없으며 '93결산시 불용액 7억1천5백만원과 대비해 볼때 41.0%의 수준에 달하는 수급판단이 향상되었으나 당초예산편성시 좀 더 면밀한 수요판단이 요구된다 할 것임.

○ 시·군구 행정운영

· 총예산현액 대비 2.0%인 9억7백만원 규모로 96.3%인 8억7천4백만원이 지출되었고, 3.7%인 3천3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 불용액발생 내역으로는

- 예산집행잔액	1천6백만원
- 지급사유미발생	5백만원
- 계획변경취소	1천2백만원 으로서

이는 일반수용비, 보상금, 민간위탁금과 포상금의 사유미발생 및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등의 변경취소에 기인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됨.

○ 행정감사분야에 있어서는

- 총예산현액 대비 0.2%인 1억6백만원 규모로 89.6%인 9천5백만원이 지출되었고, 10.4%인 1천1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바
- 불용액발생 내역으로는
예산집행잔액이 1천1백만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의 수용비와 운영수당, 급량비 및 보상금의 집행잔액으로서 이견이 없으며
대체적으로 적정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됨.

○ 지역안정분야에 있어서는

- 총예산현액 대비 0.2%인 9천만원 규모로 97.8%인 8천8백만원이 지출되었고, 2.2%인 2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 불용액발생 내역으로는
- 예산집행잔액 2백만원 으로

이는 비정규직 보수인 일용인부임의 집행잔액으로서 이견은 없음.

○ 지역개발분야에 있어서는

- 총예산현액 대비 16.8%인 75억2천2백만원 규모로 97.4%인 73억2천4백만원이 지출되었고 0.7%인 5천만원은 지역개발포괄사업인 대원장~원예조합간 가로 축조공사비로서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익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1.9%인 1억4천8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 불용액발생 내역으로는
포괄사업 시설비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집행잔액으로서 이견이 없음.

○ 문화예술진흥분야에 있어서는

- 총예산현액 대비 21.4%인 95억8천9백만원 규모로 97.2%인 93억1천7백만원이 지출되었고 2.8%인 2억7천2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 불용처리발생 내역으로는
- 예산집행잔액 4백만원
- 계획변경취소분 2억6천8백만원 으로

이는 청주고인쇄박물관의 사업소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청주시로 이관됨에 따라 지출 계획의 변경에 의한 불용액으로 이견이 없음.

○ 관광, 국제교류분야에 있어서는

· 총예산현액 대비 9.5%인 42억6천9백만원 규모로 99.8%인 42억6천1백만원이 지출되었고, 0.2%인 8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바

· 불용액발생 내역으로는

- 예산집행잔액 3백만원
- 지급사유미발생 5백만원 으로

이는 관광관리 시설비의 집행잔액과 운영수당 및 보상금의 지급사유미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됨.

○ 체육진흥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 총예산현액 대비 9.6%인 42억7천9백만원 규모로 99.4% 42억5천2백만원이 지출되었고, 0.6%인 2천7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 불용액발생 내역으로는

- 예산집행잔액이 2천7백만원 으로

이는 직장체육팀운영상에 있어 보상금에 대한 예산집행잔액으로서 이견이 없음.

○ 사회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 총예산현액 대비 0.1%인 5천8백만원 규모로서 37.9%인 2천2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62.1%인 3천6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바

이는 일반수용비와 자치단체대행사업비의 계획변경취소로 발생한 불용액으로서 이견이 없음. 다만, 사업계획수립시 면밀한 판단을 하지않고 단순한 계획하에 예산계상이 이루어지는 사례는 앞으로 없어야 될것으로 사료됨.

○ 지방수입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 총예산현액 대비 0.4%인 1억9천7백만원 규모로 87.3%인 1억7천2백만원이 지출되었고, 12.7%인 2천5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 불용처리발생 내역으로는

- 예산집행잔액 2천1백만원

- 지급사유미발생 4백만원 으로

이는 일반운영비의 수용비 등과 임차료의 지급사유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서 이견은 없으나 당초예산편성시 적정예산책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요액 판단에 세심한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회계관리 및 재산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총예산현액 대비 16.5%인 73억7천9백만원 규모로 37.7%인 27억8천3백만원이 지출되었고 60.9%인 44억9천4백만원 중 공무원교육원 이전신축에 따른 시설비와 감리비 43억2천2백만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국공유재산관리 차원의 종축장 이전유보 및 경찰청 이전계획 미확정에 따른 진입로 확장 부지매입 이월금 1억7천2백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1.4%인 1억2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 불용처리발생 내역으로는

- 예산집행잔액 1억2백만원 으로

이는 회계관리의 시설장비유지비, 차량관리의 자산취득비, 영선관리의 공공요금 및 계세공과금, 연료비, 감리비 등의 집행잔액으로서 차후 세심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됨.

2. 민방위국소관

2. 민 방 위 국 소 관

가. 세 출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계	358	339	-	19
민방위 관리	287	270	-	17
비상 대책	71	69	-	2

- 민방위국소관의 예산현액 3억5천8백만원중 94.7%인 3억3천9백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없으며 5.3%인 1천9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나. 일반회계 세출결산

□ 검토의견

- 민방위국소관 총예산현액 3억5천8백만원중 5.3%인 1천9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바 이는 전액 예산집행잔액으로서
- 불용액발생 내역으로는
 - . 민방위관리비에 있어
예산현액 3억5천8백만원 대비 80.2%인 2억8천7백만원중 6.3%인 1천7백만원과
 - . 비상대책비에 있어
예산현액 대비 19.8%인 7천1백만원중 2.8%인 2백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 되었음.

○ 이를 세분하여 분석하면

· 민방위관리비 불용액 1천7백만원중

- 민방위 운영관리 4백만원
- 민방위 시설장비 2백만원
- 민방위 교육훈련비 1천1백만원 으로

이는 전액 예산집행잔액 인바, 민방위운영관리의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관서당경비 등의 집행잔액과 민방위시설장비 유지비와 민방위교육훈련 보상금 등의 집행잔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액이며

· 비상대책비에 있어서는 불용액 2백만원중

- 비상대비 및 예비군관리 업무 2백만원 으로

이는 수용비 및 자산취득비와 급량비 등의 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액으로 이견이 없음.

3. 소방본부소관

3. 소방본부소관

가. 세출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계	21,084	17,205	2,630	1,249
소방 행정 관리	7,077	5,014	1,915	148
소방 방호 관리	775	334	409	32
청주소방서운영	4,497	4,151	83	263
충주소방서운영	2,877	2,681	-	196
제천소방서운영	2,278	1,821	223	234
영동소방서운영	2,144	1,870	-	274
중평소방서운영	1,436	1,334	-	102

- 소방본부소관의 총예산현액 210억8천4백만원중 81.6%인 172억5백만원이 지출되었고 12.5%인 26억3천만원이 사고 이월되었으며, 5.9%인 12억4천9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나. 일반회계 세출결산

□ 검토의견

- 소방본부소관 총예산현액 210억8천4백만원중 12.5%인 26억3천만원이 사고 이월 되었으며 5.9%인 12억4천9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바, 불용액 전액은 예산집행 잔액으로서

- 이를 세분하여 분석해보면)

· 소방행정 관리비에 있어

예산현액 대비 36.6%인 70억7천7백만원중 27.1%인 19억1천5백만원은 제천, 영동 소방서의 신.증축공사에 따른 공기부족에 의한 소방장비 관서시설비가 사고이월 된 것이며, 2.1%인 1억4천8백만원은 인건비 및 제수당과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 잔액으로 보다 면밀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소방방호관리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대비 3.7%인 7억7천5백만원중 52.8%인 4억9백만원은 화재예방홍보에 따른 광역부신통신망 공사와 관련한 공기부족으로 발생한 사고이월액이며 4.1%인 3천2백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바, 이는 화재예방홍보 및 의용소방대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항목의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운영수당, 급량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잔액으로서 이견이 없음.

- 청주소방서 운영에 있어서는

예산현액대비 21.3%인 44억9천7백만원중 1.8%인 8천3백만원이 시설장비보강 차원의 무전기구입과 관련하여 물품의 납품지연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사고이월 되었으며 5.8%인 2억6천3백만원은 인건비 및 제수당과 제세공과금, 보상금 등의 집행잔액으로서의 인건비 및 제수당에 있어서의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은 인력수급판단에 부적절한 면모로서 매년 발생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곧바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충주소방서 운영에 있어서는

예산현액대비 13.6%인 28억7천7백만원중 6.8%인 1억9천6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이 또한 청주소방서와 같은 맥락으로 인건비등 제수당에 있어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차후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재천소방서 운영에 있어서도

예산현액대비 10.8%인 22억7천8백만원중 9.8%인 2억2천3백만원이 공기부족에 의한 재천소방서 신축공사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와 무전기구입에 따른 납품지연에 의한 사고이월분이며 10.3%인 2억3천4백만원의 집행잔액으로 인건비등 제수당의 집행잔액이 주원인이며,

- 영등소방서 운영에 있어서는

예산현액대비 10.2%인 21억4천4백만원중 12.8%인 2억7천4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바, 이중 71.9%가 인건비 및 제수당등의 집행잔액이네

- 중평소방서 운영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대비 6.8%인 14억3천6백만원중 7.1%인 1억2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
는바,

이 또한 인건비 및 제수당 등의 집행잔액인 것으로 사료됨.

- 전체적으로 불매 소방본부소관 불용액 12억4천9백만원중 58.1%인 7억2천6백만원이
인건비관련 집행잔액으로서 이는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 책정한데 기인한 것으로
것으로 부적정한 예산운용이 되었다 할 수 있겠음.

4. 공무원교육원소관

4. 공무원교육원소관

가. 세출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계	1,538	1,451	-	87
서무관리	1,270	1,215	-	55
교학관리	268	236	-	32

- 공무원교육원소관의 총예산현액 15억3천8백만원 규모중 94.3%인 14억5천1백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없으며 5.7%인 8천7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나. 일반회계 세출결산

□ 검토의견

- 공무원교육원소관 총예산현액 대비 5.7%인 8천7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바, 이는 예산집행잔액 7천4백만원, 예산절감액 1천2백만원, 지급사유미발생 1백만원으로서 거의 대부분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등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들로 사료되기에 이견이 없음.

- 이를 세분하여 분석해보면

· 서무관리 분야에 있어

총예산현액 15억3천8백만원 대비 82.6%인 12억7천만원 규모로 95.7%인 12억1천5백만원이 지출되었고, 4.3%인 5천5백만원이 불용처리 된 것으로

. 불용처리 내역으로는

- 인건비 및 수당	3천만원
- 관서운영비	6백만원
- 일반운영비	1천6백만원
- 업무추진비	1백만원 으로

이는 예산집행잔액이 5천4백만원, 지급사유미발생 1백만원이 불용처리 된것으로
소요인건비 및 기본적경상경비의 소요판단에 보다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교학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총예산현액 대비 17.4%인 2억6천8백만원 규모로 88.1%인 2억3천6백만원이 지출
되었고, 11.9%인 3천2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이는 일반수용비 및 보상금, 포상금 등의 예산집행잔액과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
임차료 등의 예산절감액에 기인한 것으로서 예산집행잔액 2천만원, 예산절감액
1천2백만원으로 이견이 없음

5. 도민교육원소관

5. 도민교육원소관

가. 세출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계	1,304	1,147	-	157
사업소 운영	1,304	1,147	-	157

- 도민교육원소관의 총예산현액 13억4백만원 규모중 87.9%인 11억4천7백만원이 지출되었고 12.1%인 1억5천7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

나. 일반회계 세출결산

□ 검토의견

- 도민교육원소관 총예산현액 대비 12.0%인 1천5천7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바
- 이를 세분하여 분석해보면

. 사업소운영에 있어서

인건비의 급여 및 수당등 8천4백만원, 관서운영의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연료비등 4천6백만원, 보상금등 2천7백만원으로 적정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하차후 예산편성시 보다 면밀한 수급관리 검토와 적정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증 평 출 장 소 소 관

6. 증평출장소소관

가. 세출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계	18,659	16,489	1,095	1,075
일반행정비	7,183	6,476	41	666
사회복지비	3,887	3,607	96	184
산업경제비	1,108	820	270	18
지역개발비	5,356	4,595	688	73
문화체육비	958	840	-	118
민방위비	26	22	-	4
지원및기타경비	141	129	-	12

- 증평출장소소관의 총예산현액은 186억5천9백만원으로
- 이중 88.4%인 164억8천9백만원이 지출되었고, 5.9%인 10억9천5백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5.7%인 10억7천5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나. 일반회계 세출결산

□ 검토의견

- 중평출장소소관 총예산현액중 88.4%인 164억8천9백만원이 지출되었고 5.9%인 10억9천5백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0.08%인 1천6백만원이 보조금잔액이며 5.7%인 10억5천9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바,
- 불용액에 대해 원인별로 세분하여 분석해보면
예산집행잔액이 9억1천3백만원, 계획변경취소가 5백만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이 1억4천1백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천6백만원으로서
- 이를 분야별로 세분하여 분석해르면
- 일반행정비에 있어서
 - 예산현액 186억5천9백만원 대비 38.5%인 71억8천3백만원 규모로 현액의 90.2%인 64억7천6백만원이 지출되었고 0.6%인 4천1백만원이 미암3리마을회관증축공사, 연탄1리간이급수시설공사, 광덕리환경개선 정비공사와 관련 공기부족에 의한 사고이월액이며, 9.2%인 6억6천6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 불용액발생 내역으로는
 - 예산집행잔액 5억9천1백만원
 - 계획변경취소 5백만원
 - 예산집행사유미발생 7천만원 으로서
 - 이는 각급 인건비 및 제수당 등과 복리후생비, 제세공자금, 보상금, 민간경상보조금 등이 과다 책정된바 금후 예산책정시 면밀히 분석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사회복지비에 있어서는
 - 예산현액 대비 20.8%인 38억8천7백만원 규모로 현액의 92.8%인 36억7백만원이 지출되었고 2.5%인 9천6백만원은 연탄1리와 광덕2리의 간이급수시설에 따른 민간자본보조사업이 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액 6천만원과 쓰레기 매립장의 펜스설치를 함에있어 동절기로 인한 공사연기에 기인한 3천6백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4.7%인 1억8천4백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음.

· 불용액발생 내역으로는

- 예산집행잔액	1억4백만원
- 예산집행사유미발생	6천5백만원
- 보조금잔액	1천5백만원 으로

이는 각급 인건비와 구료비, 보상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등의 보조금 집행잔액과 예산집행 사유의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책임은 인정되나 예산계상시 수요판단에 적정을 기하여 예산책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산업경제비에 있어서는

· 예산현액 대비 5.9%인 11억8백만원 규모로 현액의 74.0%인 8억2천만원이 지출되었고 23.4%인 2억7천만원이 공동퇴비제조장 설치에 따른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공기부족에 의해 사고이월 되었으며 1.6%인 1천8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 예산집행잔액	1천3백만원
- 예산집행사유미발생	4백만원
- 보조금집행잔액	1백만원 으로

이는 보조금 집행잔액 1백만원과 자산취득비, 임차료, 보상금 등의 집행잔액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등에서 발생한 예산집행잔액으로서 이견은 없음.

○ 지역개발비에 있어서는

· 예산현액 대비 28.7%인 53억5천6백만원 규모로 현액의 85.8%인 45억9천5백만원이 지출되었고 12.8%인 6억8천8백만원 중 중평공업단지기본계획의 공업단지지구 미승인에 의한 이월액 6천7백만원, 가로축조공사 토지매입 보상금 미수령에 따른 이월액 2천만원, 가로축조공사 시설비에 있어서 보상지연으로 공사지연이 되므로 발생된 이월액 5천9백만원, 중앙~문방간 군도정비사업 시설비와 군도정비에 따른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동정기로 인한 공사연기로 인한 이월액 2억8천2백만원, 지방하천관리를 위한 보강천 수질개선사업에 따라 동정기로 인한 공사연

기에 의해 발생된 이월액 1억4천4백만원과 증평하수처리장 실시설계비에 있어서
용역납품후 사업인가중으로 발생된 이월액 1억1천5백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1.4%인 7천3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 불용액발생 내역으로는

- 예산집행잔액 7천3백만원 으로

이는 기타작보수 및 일용인부임 및 연구개발비, 감리비, 조사설계비, 토지매입비,
제세공과금, 재료비, 보상금 등에 의해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이건은 없으나 신중한
사업내역 검토로 과다 불용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책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
으로 사료됨.

○ 문화체육비에 있어서는

. 예산현액 대비 5.1%인 9억5천8백만원 규모로 현액의 87.6%인 8억4천만원이 지출
되었고 이월액은 없으며, 12.4%인 1억1천8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 불용액발생 내역으로는

- 예산집행잔액 1억1천7백만원

- 예산집행사유미발생 1백만원 으로

문화예술진흥비의 일반수용비와 문예시설확충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와
문화재관리에 관련한 집행잔액으로 예산책정시 불요불급한 사업책정으로 예산의 사장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민방위비에 있어서는

. 예산현액 대비 0.1%인 2천6백만원 규모로 현액의 84.6%인 2천2백만원이 지출
되었고 이월액은 없으며 15.4%인 4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 불용액발생 내역으로는

- 예산집행잔액 4백만원 으로

이는 민방위 교육훈련 보상금과 일반수용비 및 제세공과금 등의 민방위관련 업무의
집행잔액으로서 이건이 없음.

○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대비 0.75%인 1억4천7백만원 규모로 예산현액의 91.5%인 1억2천9백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없으며 8.5%인 1천2백만원이 활용처리 되었음.

· 불용액발생 내역으로는

- 예산집행잔액 1천2백만원 으로서

이는 일반수용비의 집행잔액과 문예시설확충사업의 민간경상보조사업과 문화재관리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의 예산집행잔액으로서 이견이 없음.

III. 예 비 비 지 출

III. 예 비 비 지 출

(단위 : 원)

구분	사 업 명	지출결정액	지 출 액	불 용 액	처 리 일 자		예비비지출 사 유
					승인 결 정	지출일자	
내무 국	연 급 금 금	47,664,000	47,664,000	-	94. 11. 28	94. 12. 1	순직공무원 유족보상금
		740,000	740,000		94. 12. 19	94. 12. 20	일용직 퇴직금지급
중평	한해대책 임차료	3,200,000	1,606,000	1,594,000	94. 8. 30	94. 8. 30	한해대책 하상굴착장 비임대
	시설장비 유지비	1,600,000	1,579,780	2,220	94. 8. 5	94. 8. 5	한해대책 유료비
	재 료 비	7,522,000	7,518,200	3,800	94. 9. 13	94. 9. 13	한해대책용 장비구입
	민 간 자본보조	12,500,000	12,500,000		94. 12. 30	94. 12. 30	한해대책용 소형관정개 발
	재해예방 실시설계 비	88,000,000	74,650,400	13,349,600	94. 11. 18	94. 11. 18	위험교량보 수

- 공무원연금법 제61조2항 제65조2항에 의한 유족보상비로 48,404,000원이 지출결정 및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없으며
-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한해대책 및 재해예방차원의 임차료의 4건의 지출요인에 의해 112,822,000원이 지출결정되어 97,872,380원이 긴급배정 지출되었고 14,949,62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바 불용역사유는 한해대책비의 집행잔액과 재해 예방실시설계비와의 입찰차액에서 발생된 것으로 이견이 없음.

참 고 법 령

< 공무원연금법 >

제61조(유족보상금) ①공무원이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하거나 퇴직후 3년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① 제1항의 유족보상금의 금액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보수월액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5조(비용부담의 원규) ①생략

② 제34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중 공무상의 질병, 부상,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한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지방재정법 >

제34조(예비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1.12.31>

제30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용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신설 91.12.31.>

④ 지방자치단체의 매 회계년도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은 내무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다음 전년도 8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 농어업재해대책법 >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풍수해 대책법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재해의 예방·피해의 경감·재해의 복구 및 지원조치를 받은 농가 및 어가는 이 법에 의한 보조 및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